

## 부속병원통합운영및관리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가천학원 정관에 의거하여 가천대학교부속 동인천길병원과 부속길한방병원(이하 “부속병원”이라 한다)의 통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
**제2조(구성 및 운영)** ①법인산하에 병원의 통합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의료원을 둔다.

②의료원에는 원장을 두며 두 부속병원의 운영을 총괄 지휘, 감독한다.

③부속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부속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의료원장은 양·한방 협진, 부속병원간 기능연계 및 효율화를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속병원장, 각 부장으로 구성된 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

⑤의료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3조(임면)** 의료원장과 부속병원장은 정관에 따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.

**제4조(위원회 심의사항)** 의료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의료원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심의된 사안을 최종 결정한다. 다만 제6호, 7호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①부속병원 운영에 따른 장·단기 계획의 수립과 이의 검토에 관한 사항

②부속병원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
③부속병원 양·한방 협진에 관한 사항

④부속병원 진료 각 과 및 행정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

⑤부속병원 의료수가의 조정에 관한 사항

⑥부속병원 인력의 수급, 적정 배치 및 조직 개폐에 관한 사항

⑦부속병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⑧직원 복리증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

⑨기타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
## 8-1-1~2 제8편 부속병원

**제5조**(회의소집 및 의결) 의료원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인 개최를 기준으로 하고 의료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6조**(안전제출) 의료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은 의료원장과 부속병원장이 제출할수 있으며 부속병원장은 제출할 안전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료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**(간사) ①의료원 운영위원회 간사는 각 부속병원의 교원 또는 직원중에서 선임한다.

②간사는 의료원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**제8조**(결재계통) ① 부속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병원장을 거쳐 의료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 의료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임전결이 타당한 사항은 병원장에게 결재를 위임할수 있다.

②위임전결사항일지라도 양·한방 협진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료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